

#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72
----------	------

2013년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7월 5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간 우수숙박시설 통합·운영추진으로 우수숙박시설 지정 및 관리를 한국관광공사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동 조례안은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 간 우수숙박시설 통합·운영추진으로 우수숙박시설 지정 및 관리를 한국관광공사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관광진흥법(제19조의2)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숙박시설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숙박시설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우수숙박시설 지정의 절차 및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이에 따라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굿스테이’, 서울시는 ‘이노스텔’이라는 명칭으로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 및 건전한 숙박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운영해 왔음.

<굿스테이 지정 현황>

	신규 지정	지정유지
2007년	40개소	37개소
2009년	30개소	17개소
2011년	90개소	69개소
2013년	112개소	112개소
이노스텔 편입	27개소	27개소
계	299개소	262개소

<이노스텔 지정 현황>

	신규 지정	지정취소	지정유지(누계)
2007년	29개소	-	29개소
2008년	59개소	10개소	78개소
2009년	36개소	12개소	102개소
2010년	15개소	19개소	98개소
2011년	5개소	66개소	37개소
2012년	7개소	3개소	41개소
계	151개소	110개소	41개소

- 그러나 동일한 숙박시설에 대해 중복 지정되기도 하고, 브랜드 혼란, 분산된 홍보활동 등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서울시는 201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와 장기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4월 19일 ‘이노스텔과 굿스테이 통합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이노스텔 41개소 중 굿스테이와 중복 지정되어 있는 14개소를 제외한 27개소를 한국관광공사의 별도 지정절차 없이 굿스테이에 편입시켰으며, 향후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우수숙박시설의 해외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고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 동 조례안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과 절차, 지정 이후 지도점검과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울시가 한국관광공사와 ‘이노스텔과 굿스테이 통합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정은 한국관광공사, 지도점검은 서울시가 나누어 맡고, 홍보와 지원은 공동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등에 따라 서울시 관내 우수 숙박시설의 지도점검, 홍보 및 지원업무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됨.

붙임.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공사 간 ‘이노스텔과 굿스테이 통합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공사 간 '이노스텔과 굿스테이 통합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우수 숙박시설로 지정(이하 '지정시설')하는 서울시 이노스텔과 관광공사 굿스테이를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우수 숙박시설 지정사업의 중복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서울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서울시"와 "관광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관광공사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노스텔」과 「굿스테이」 브랜드를 하나로 정하고, 새로운 BI(Brand Identity)를 디자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서울시가 기 지정한 「이노스텔」은 관광공사의 별도 지정절차 없이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 숙박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단, 차후지정부터는 굿스테이 지정제도에 의거하여 심사를 받는다.
3. 관광공사는 우수 숙박시설에 대한 홍보, 판촉, 서비스 교육, BI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속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4. 서울시는 관광공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업소에 대한 현장지도 및 감독 등을 통해 행정조치를 취한다.
5. 서울시와 관광공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 숙박시설 지정업소에 대하여 해외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한다.
6. 서울시와 관광공사는 서울시내 우수 숙박시설의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제3조(세부사항) 본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와 “관광공사”는 제2조 각 호의 사안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이행)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 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협약당사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그 위반 당사자에게 있다.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약당사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변경 등) 본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협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4월 일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한국관광공사장을 대리하여  
정책사업본부장 이재성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